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4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윤준병・임호선・이병진

강선우 • 이원택 • 서삼석

신영대 · 김윤덕 · 민형배

서영교 · 송옥주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입학하여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전북교육청 등에서는 2021년부터 시도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고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같이 농촌유학이 시도교육청 간 정책으로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에는 학생 수 증가 및 인구 유입 등 활 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자 중장기적 대책인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1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농어촌유학"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입학 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농어촌체험교육의"를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체험교육을"을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를 "학교(이하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학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 "농어촌유학"이란 농어촌
	<u>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u>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
	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
	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
	재한 학교로 전입학 하는 것
	<u>을 말한다.</u>
제14조(<u>농어촌체험교육의</u> 활성화)	제14조(<u>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u>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	<u> 촌유학의</u> 활성화)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ㆍ어업 및 농	
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	
도록 <u>농어촌체험교육을</u> 활성화	<u>농어촌</u>
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 여 농어촌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u>학교</u>에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③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u>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학교</u>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고, 농어촌유학 중
인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u>수 있다.</u>